

예산총칙

2024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2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 (단위:천원)

구 분	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	602,373,542	18,071,206
일반회계		547,040,866	16,411,226
특별회계		55,332,676	1,659,980
	기타특별회계	55,332,676	1,659,980
	상수도사업특별회계	14,652,869	439,586
	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	29,479,822	884,395
	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	484,017	14,521
	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	239,736	7,192
	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	4,726,200	141,786
	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	5,750,032	172,501

제 2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'세입·세출예산 사업명세서'와 같다.

제 3 조 2024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은 '해당없음'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'해당없음'으로 한다.

제 5 조 명시이월 사업은 '해당없음'으로 한다.

제 6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 예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4,8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 예산의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37,1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